



대한변호사협회 블록체인 · 암호화폐 질의응답집

—
2019.11 발행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블록체인 · 암호화폐 질의응답집

작성자 (가나다순)

박서영 변호사	법무법인 삼울
신용우 변호사	국회입법조사처
이경륜 변호사	법률사무소 종로
이동주 변호사	법무법인 젠
정재욱 변호사	법무법인(유) 주원
정호석 변호사	법무법인 세움
조윤상 변호사	법무법인 시헌
최영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최재원 변호사	변호사 최재원 법률사무소
최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홍승진 변호사	두손법률사무소

서문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핵심 기술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는 블록체인 기술 또는 이를 기반으로 발행된 암호화폐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관련 정부기관의 명확한 입장이나 법원의 판례도 존재하지 아니함에 따라 암호화폐와 관련된 여러 주요 쟁점들에 대하여 그 합법성 여부 등이 매우 불투명하여,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 및 일반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2018년 9월 블록체인TF를 설립하고, 이후 2019년 2월 이를 승격한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를 설립하여, 해당 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의 주도 하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전반에 걸쳐 흔히 문제가 되는 쟁점들에 대하여 암호화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자 기타 일반 국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본 질의응답집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본 질의응답집이 일반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질의응답집 발간일 이후 자본시장법 기타 암호화폐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관련 정부기관의 유권해석, 법원의 판결 등이 있는 경우 본 질의응답집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본 질의응답집의 내용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전반에 관련한 일반적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해석이 아니므로, 본 질의응답집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행동이나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되고, 그에 앞서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로부터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TABLE OF CONTENTS

1	국내에서 ICO(Initial Coin Offering)는 불법인가요?	7
2	국내에서 ICO를 진행할 경우 고려해야 할 주요 법적 이슈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7
3	국내에서 IEO를 진행할 경우 ICO 규제를 피할 수 있나요?	8
4	해외에서 ICO를 진행하면 국내법 적용을 피할 수 있나요?	8
5	해외에서 ICO를 진행할 경우 고려해야 할 주요 법적 이슈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8
6	국내에서 STO(Security Token Offering)는 허용되나요?	9
7	증권형 토큰과 유틸리티 토큰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9
8	암호화폐 거래시 양도소득세, 소득세 등이 부과되나요?	10
9	해외에서 암호화폐를 국내로 송금할 때 외국환신고를 거쳐야 하나요?	10
10	상품 판매대금이나 서비스 이용대금을 암호화폐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나요?	11
11	암호화폐를 회사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산서류에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11
12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인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설립시 고려해야 할 주요 법적 이슈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12
13	거래소에 보관중인 암호화폐를 해킹당했는데 구제받을 수 있나요?	12
14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의 일환으로 하는 자전거래, 시세조종 등은 문제가 없을까요?	13
15	암호화폐로 투자펀드를 구성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13

대한변호사협회
블록체인 · 암호화폐
질의응답집

Intentionally
Blank

국내에서 ICO(Initial Coin Offering)는 불법인가요?

#ICO #자본시장

우리 정부는 2017. 9. 29.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를 통해 ‘암호화폐를 통해 투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ICO(Initial Coin Offering)로 정의하면서, 기술, 용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국내 기업들에 대한 ICO 실태조사를 한 뒤 2019. 1. 31. ‘ICO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대응방향’ 보도 자료를 통하여 ICO 제도화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자금모집수단인 ICO’인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의 자금 모집 수단을 규제하는 것인지, 또 그 규제의 근거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ICO 전면금지 조치는 지난 2017년부터 ICO와 관련하여 유사수신행위나, 무등록 다단계, 사기 등 위법한 행위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암호화폐(가상화폐)와 관련한 제도가 확립되기 전 임시적으로 투기 심리를 완화시키고 관련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ICO 전면금지 조치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명시적으로 ICO를 금지하는 법령이 제정된 것은 아닌 바, ICO가 곧바로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ICO의 추진절차, 이를 통해 지급될 보상의 성격 등에 따라 유사수신행위, 무등록 다단계 판매, 사기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ICO의 진행 과정에서 사기, 유사수신, 무등록 다단계 등 다른 불법적인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발행되는 암호화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규정되어 있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및 증권예탁증권의 총 6가지 증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ICO의 형태와 방식은 매우 다양하여 어떠한 암호화폐가 위의 증권 기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암호화폐의 발행 방식, 발행 대상, 사용처, 발행인, 프로젝트의 성격 등 제반사정에 따라 암호화폐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모든 형태의 ICO가 일률적으로 불법 또는 합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부가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이상, ICO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이 제정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현행 법령인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등을 근거로 현행법 위반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법률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 ICO를 진행할 경우 고려해야 할 주요 법적 이슈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ICO #자본시장

현재 ICO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은 없기 때문에, ICO가 법적으로 금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ICO를 하더라도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ICO의 구체적인 목적, 구조, 절차, 방식 등에 따라 형법,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현행법령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ICO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ICO 과정에서 발행되는 암호화폐가 증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면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어 증권 공모 관련 규정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고, 결제에 주로 활용되어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유사하다면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어 그 발행, 관리에 있어 등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사기, 유사수신, 무등록 다단계 판매가 주로 문제되고 있는데, ICO를 추진함에 있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정부는 '가상통화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이나 명칭이 ICO이든 IEO이든 STO이든 암호화폐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해당하는 이상 위와 같은 법적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관련 사업 진행 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IEO를 진행할 경우 ICO 규제를 피할 수 있나요?

#ICO #자본시장 #IEO

IEO는 Initial Exchange Offering의 약자로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공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래소에서 1차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통상 상장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님) ICO에 비해 환금성이 보장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IEO는 ICO의 대안으로 언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IEO라고 하여 앞서 살펴본 법적 이슈를 모두 피해 가기는 어렵습니다. IEO 또한 암호화폐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암호화폐의 성격에 따라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고, 그 발행의 목적이나 홍보 내용 등에 따라 사기, 유사수신, 다단계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환금성, 절차, 거래소의 개입여부 등의 측면에서 IEO가 ICO와 차이가 있다고 할 수는 있으나, 법적인 관점에서는 ICO와 사실상 동일한 이슈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IEO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국내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ICO를 진행하면 국내법 적용을 피할 수 있나요?

#ICO #자본시장

형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은 해외에서 ICO를 진행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자본시장법 제2조에 의하면, 자본시장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외에서 ICO를 진행하더라도 내국인이 해당 ICO에 참여하는 등 어떤 방식으로든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라면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ICO를 진행하더라도 자본시장법의 적용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해외에서 ICO를 진행할 경우 고려해야 할 주요 법적 이슈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ICO #자본시장

해외에서 디지털 토큰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발행 국가에서의 규제입니다. 또한, 해당 토큰의 성격에 따라 규제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토큰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싱가포르를 예로 들면 싱가포르금융감독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의 a guide to digital token offering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해당 토큰이 금융투자상품인지, 순수한 암호화폐인지, 유틸리티 토큰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ICO를 진행할 때에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및 고객실사의무(Customer Due Dilligence)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인이 해외에서 ICO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한국의 여러 법령은 여전히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 법령의 적용 가능성 및 위반 여부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STO (Security Token Offering)는 허용되나요?

#STO #증권형토큰 #자본시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STO(증권형토큰공개, Security Token Offering)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STO는 암호화폐를 증권화함으로써 해당 암호화폐가 증권에 관련한 기존 법률(규제) 체계에 포섭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여 자본조달의 적법성을 갖추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2017. 9. 29.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를 통해 ‘암호화폐를 통해 투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ICO로 정의하면서, 기술, 용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정한바 있으며 현재까지도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방침 아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자본조달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발행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법령에서 정한 절차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증권형 토큰과 유틸리티 토큰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권형토큰 #유틸리티토큰 #자본시장

자본시장법 제4조 제1항은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2항은 증권의 종류를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및 증권예탁증권 등 총 6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토큰이 증권형 토큰인지 유틸리티 토큰인지 구분하기 위하여는 결국 해당 토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 제4조의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합니다.

흔히, 토큰을 보유한 자(홀더)에게 배당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며 홀더들은 이러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토큰을 취득 및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 토큰을 ‘증권형 토큰’으로, 플랫폼 내 서비스 등을 이용함에 있어 그 대가로서 사용되고, 홀더들은 직접적인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토큰을 취득 및 사용하는 경우 ‘유틸리티 토큰’으로 분류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토큰은 위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토큰의 개발 현황, 구입자의 성격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시 양도소득세, 소득세 등이 부과되나요?

#조세 #암호화폐거래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입니다.

암호화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아직 명확한 결론은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암호화폐가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즉,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성격이 명확해져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과세대상 항목에 해당되어야 과세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암호화폐와 관련된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사업에 준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 즉 영리목적성, 독립성, 계속성을 만족할 경우 과세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를 현금이 아닌 암호화폐로 받은 경우 근로소득에 산입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양도에 따른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에 열거된 항목과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아 현행법상 과세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의 경우 포괄적 과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암호화폐로 인하여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한 경우 법인세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역시 과세 대상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암호화폐 상속 또는 증여 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에서 암호화폐를 국내로 송금할 때 외국환신고를 거쳐야 하나요?

#ICO #외국환

암호화폐는 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하급심 판결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암호화폐 송금은 원칙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송금 목적이 거래 대금 결제 목적이거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목적일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목적 여부를 고려하여 외국환 거래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은 암호화폐가 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어떤 거래에 있어서 외국환거래법이 적용 되는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으므로 추후에 개정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품 판매대금이나 서비스 이용대금을 암호화폐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나요?

#암호화폐 #조세

상품 판매대금이나 서비스 이용대금을 금전이 아닌 암호화폐로 받는 것은 영업자의 자유로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암호화폐로 상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상품 등을 판매하면서 금전이 아닌 암호화폐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도 그 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이 때 공급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상품 등의 대가를 금전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품 등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금전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여러 견해들이 있으나, 어느 견해에 따른든 정상적인 가격에 의한 거래라는 전제하에, 상품 등을 공급할 당시 대금으로 지급받은 암호화폐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될 것입니다.

암호화폐를 회사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산서류에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암호화폐 #회계

회사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채굴업자로서 보유하는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로서 보유하는 경우, 일반적인 투자자로서 또는 거래대금 등으로 받은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채굴업자로서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경우에 암호화폐를 재고자산으로, 암호화폐 거래소가 고유자산으로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경우 암호화폐를 당좌자산으로 회계장부에 계상한 예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확립된 원칙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의 회계처리와 관련해서 암호화폐의 경제적 실질(지급결제 수단인가 투자수단인가 등)이 무엇인지, 시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가격변동성에 따른 평가손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아서 회계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일반적인 투자자(거래대금으로 암호화폐를 받은 경우 포함) 입장에서 보유하는 암호화폐는 무형자산으로 취급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인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설립시 고려해야 할 주요 법적 이슈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거래소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인가제, 등록제, 신고제 등이 논의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함에 있어 어떠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추후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 운영함에 있어 일정한 인허가를 취득해야 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현행법상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시 인허가 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을 마련함에 있어 국내법적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와 이용자 사이에 여러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바 사전에 이용자 보호규정, 면책규정, 내부통제기준, 비밀유지 관련 규정을 정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금융회사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KYC, AML이 의무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KYC, AML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경우 국내의 법령(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AML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령이 제정될 예정이므로, 이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최근 거래소에서 자체적인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방문판매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소에 보관중인 암호화폐를 해킹당했는데 구제받을 수 있나요?

#암호화폐해킹

원칙적으로는 불법행위자인 해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커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차선책으로 거래소에 대한 배상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소가 해킹으로 인한 피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으나, 해킹이 거래소 보안 시스템의 하자 내지는 기타 보안상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면 고객은 거래소에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거래소에서 자체 약관으로 자신들의 보안상 과실로 인한 해킹 책임까지 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의 일환으로 하는 자전거래, 시세조종 등은 문제가 없을까요?

—
#거래소 #형사

상장증권 등의 매매에 관하여 이루어지는 시세조종행위와 금융투자업자의 자전거래는 자본시장법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현행 자본시장법상 암호화폐를 금융투자상품으로 보기 어렵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금융투자업자로 볼 수 없어서, 암호화폐의 시세조종이나 자전거래 행위가 곧 자본시장법상의 처벌 대상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전거래나 시세조종은 사기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여야겠습니다. 블록체인에 남아 있는 거래의 기록이 불법행위의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암호화폐로 투자펀드를 구성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
#크립토편드 #자본시장

금융위원회는 2018. 10. 24. 보도참고자료(일명 “가상통화펀드”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를 배포하였습니다. “가상통화펀드”는 집합투자업의 외형구조를 갖추고 펀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일반투자자들이 자본시장법상 적법하게 설정된 펀드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나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인가를 받지 않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금지가 원칙이고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 규제방식), 암호화폐로 투자펀드를 구성하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블록체인 · 암호화폐
질의응답집



대한변호사협회

(06234)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대한변협회관 18층
(역삼동 823번지 풍림빌딩18층)

전화번호 02-3476-4000

팩스번호 02-3476-4008